학생자치단체설립-운영및활동규정

2016. 6. 22 제정 2022. 7. 1 개정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자치단체의 설립,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학생자치단체의 정의) 학생자치단체라 함은 본교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 산하에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2조(학생자치활동의 원칙) ① 본교 재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학생회 이외의 단체에의 가입여 부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.
 - ② 학생회 및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회칙은 학생 스스로 정하되 법령, 학칙 및 본교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 - ③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.
 - ④ 학생자치단체에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 - ⑤ 학생자치단체가 사회봉사활동 또는 창학이념의 구현에 그 활동의 내용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지원 또는 사회봉사시간을 부여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.
- 제4조 (단체설립요건) ① 학생자치단체로서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본대학교 학칙에 부합되는 활동이어야 한다.
 - 2. 단체 고유의 특성을 가져야 하며, 교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어야 한다.
 - ② 총학생회 산하 기구 등은 총학생회 회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.
 - ③ 동아리를 설립하거나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동아리연합회회칙에 따라야 한다.
- 제5조 (임원 선출 및 임기) ① 학생자치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하며,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학생·인재개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7.1.>
 -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③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곧 보선하여 그 결과를 학생·인재개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7.1>
- 제6조(지도교수) ① 지도교수를 두는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체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②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행사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지도하도록 노력한다.
- 제7조 (재정 등) ① 학생자치단체의 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학생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회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대학으로 수납된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장이 이전학기 결산서, 당해학기 예산안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며,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제공한다.
 - ④ 전항은 교지편집위원회(근맥)에서 집행하는 교지대에도 준용한다.
- 제8조(경비지원) ① 학생자치단체 활동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·인재개발처(학생지원과)에 경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.>
 - ② 학생·인재개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<개정 2022.7.1.>
 - 1. 단일 학과나 단체의 구성원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· 문화행사

로서 그 내용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2. 그 활동 및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교위를 선양하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창학이념의 구현이나 사회봉사를 위한 활동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(단체의 해산 등) ① 학생자치단체는 단체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.
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학생자치단체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현저하고 명백하게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
 - 2. 단체의 설립목적 및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- 3. 단체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권침해 등으로 대학생다운 자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0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<2016. 6. 22.>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설립·운영되고 있는 학생자치단체는 이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2. 7. 1.>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